

大韓帝國 前後期の 獸醫發達史 II

이 시 영 | 경마평론가

대한수의

농상공부와 수의의 변천사

1897년에 조선(朝鮮)이라는 국호가 사라지고 대신 대한제국(大韓帝國)이라는 국호를 사용하였다. 바로 2년 전 조선조에서는 정부조직법을 근대적으로 개편하고 있는데 정부조직법에 수의의 관장 부서가 명시되어 있다. 군부의 수의는 국방용으로서의 수의인데 비해서 농상공부에서의 수의는 산업상 필요한 수의였을 것이다. 군부관제에서는 이미 관제에다 수의라는 용어가 규정되었으나 농상공부 관제에서는 수의라는 용어가 없고 분과규정에서 규정하였다.

1895년(개국 504년 3월 25일 반포) 농상공부 관제
 第六條 農務局에서는 農業 森林 水産 牧畜 狩獵 蠶茶 蔘業 及 農事에 關한 事務를 掌함이라고만 되어 있으며 세부규정인 농상공부분과규정에 수의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이는 군부관제와 더불어 우리 역사상 최초의 수의라는 용어가 정부 조직법에 사용된 것이라 할 것이다.

농상공부에서의 수의의 위치

1895년(개국 504년) 4월 22일 목요일에 발간된 관보 20호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휘보(彙報)란에 관청사항(官廳事項)으로서 농상공부분과규정(農商工部分課規程)이라는 것이다. 대신관방(大臣官房)에 비서과(秘書課)와 문서과(文書課)를 두었으며 농무국에는 3개과를 두었는데 원문그대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第四條 農務局에 左開한 三課를 置其 其事務를 分掌케 함

農事課 森林課 産業課

第五條 農事課에서는 左開한 事務를 掌함

- 一 農業 及 農業土에 關한 事項
- 二 農産物의 害蟲豫防 及 驅除와 其他 農産物에 係한 一切 損害豫防에 關한 事項
- 三 獸醫 及 蹄鐵工에 關한 事項
- 四 畜産에 關한 事項
- 五 狩獵에 關한 事項

第六條 森林課(생략)

第七條 産業課에서 左開한 事務를 掌함

- 一 漁業漁船 及 漁具에 關한 事項

수의역사특별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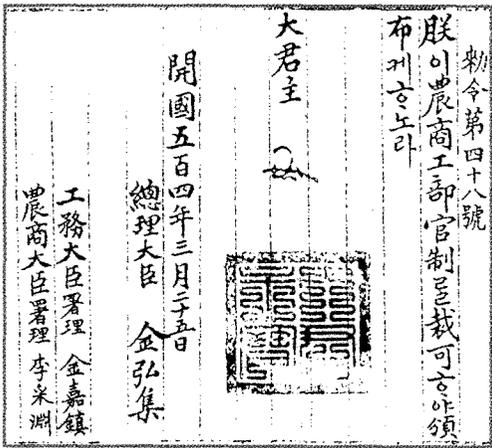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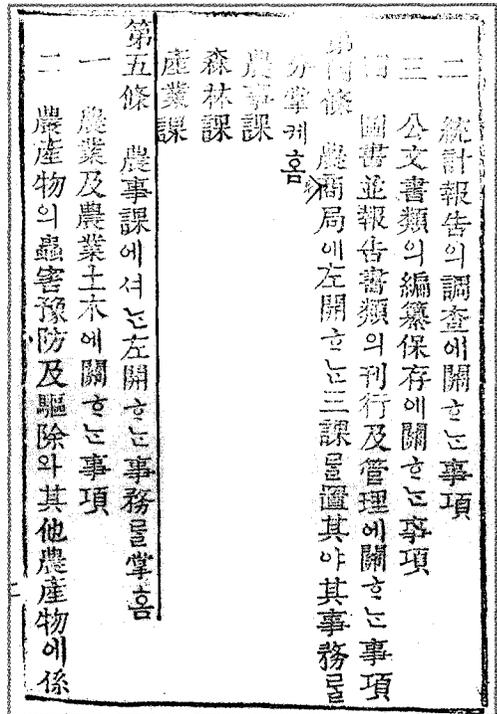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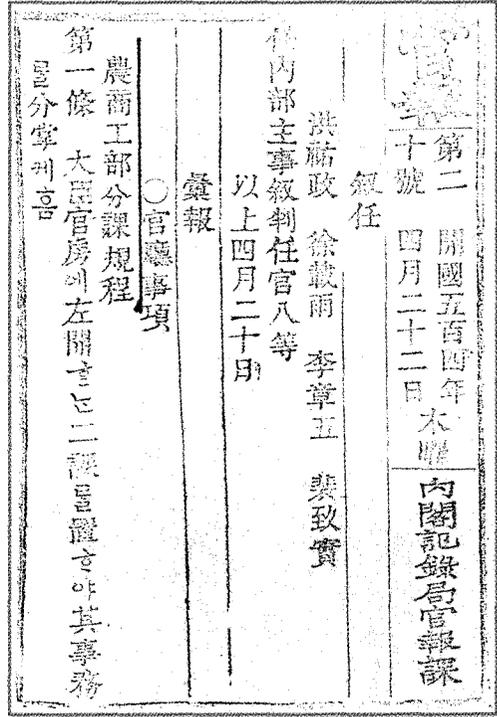
- 二 鹽田 及 鹽政에 關하는 事項
- 三 養蠶 葎業(삼업) 及 製茶에 關하는 事項
(주; 삼업은 인삼을 말한다)
- 四 前二課의 主務에 屬지 아니하는 事項

이는 전문 15조로 구성되어있는데 당시 농상공부에는 농무국, 통신국(通信局), 상공국(商工局), 광산국(鑛山局), 회계국(會計局)의 5개국이었다.

수의 급 제철공이라고 규정한 것은 당시의 말이 군용으로서 중요한 위치였기에 말의 발굽보호를 위한 제철공(裝蹄土)의 중요성이 반영된 것이다.

앞으로 살펴볼 여러 문헌들에서도 제철공이라는 용어가 수의와는 별도로 등장하는데 오늘날 우리의 정부조직법에는 제철공이라는 용어는 찾아 볼 수 없으며 단지 한국마사회법 제14조에 장제사의 자격 기준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장제사 등록규정이라는 것을 한국마사회의 내부규정으로 두고 있다.

1895(개국 504년)내 반포된 농상공부관제와 농상공부본과규정을중 제9조



三 獸醫及蹄鐵工에 關한 事項
 四 畜産에 關한 事項
 五 狩獵에 關한 事項
 第六條 森林課에서 左開한 事務를 掌함
 一 森林施業並 森林區域及 境界의 調査에 關한 事項
 二 森林의 保護와 利用及 處分에 關한 事項
 三 森林編入及 除却에 關한 事項
 四 森林의 統計及 其帳簿에 關한 事項
 五 森林의 收入及 經費에 關한 事項

1905년(광무 9년) 2월 12일 農商工部分課規程改正件

第九條 農鑛局에 左開 二課를 寅하야 其 事務를 分掌케함이라
 農桑課 鑛務課

第十條 農桑課에서는 左開事務를 掌함이라
 一 農業及 農業土木과 種桑에 關한 事項
 二 農産物의 害蟲豫防及 驅除와 其他 農産物에 係한 一切 損害 豫防에 係한 事項
 三 獸醫及 蹄鐵工에 關한 事項
 四 畜産에 關한 事項
 五 狩獵에 關한 事項
 六 森林施業 并 區域及 境界의 調査와 保護와 利用及 處分과 編入及 除劫과 統計及 諸帳簿와 收入及 經費와 林産物品 森林에

屬한 土地 建造物에 關한 事項
 七 漁業 漁船及 漁具와 鹽田 鹽政에 關한 事項
 八 蠶蠶及 蠶桑試驗場에 人民授業과 製茶에 關한 事項

1905년(광무 9년) 2월 19일 칙령 제6호 農商工部

이 규정에 의하면 農務국이 農光국으로 改칭되고 그에 따른 分과규정 改정에는 農光국에 農상과와 광무과를 두는 것으로 되어 있다.

第四條 農商工部에 左開局을 寅함이라
 鐵道國 商務局 農鑛局 政務局

第八條 農鑛局에서는 左開事務를 掌함이라
 一 農業 山林 水産 牧畜 狩獵과 蠶業及 桑茶에 關한 事項
 二 鑛山調査及 其他官民業에 屬한 鑛山에 關한 事項
 三 地質及 分析에 關한 事項

그에 따른 分과규정 改정에는 農光국에 農상과와 광무과를 두는 것으로 되었다.

第三條 農桑課에서는 左開事務를 掌

여기서는 光무 9년 2월 12일의 分과규정을 그대로 이기하고 있다.
 제십일조 光무과(생략)

1906년(광무 10년) 8월 8일 農商工部分課規程改正件

第五條 農務局에 左開 二課를 寅하야 其 事務를 分掌케함이라

農業課 殖産課

第六條 農業課에서는 左開事務를 掌함이라
 1에서 5항까지는 光무 10년 1월 19일의 分과

<p>第五條 農務局에 左開 三課를 掌 擘 一 農政 上 調査 改良 關한 事項 二 農業 及 蠶業의 獎勵 改良 關한 事項 三 農業 水利 關한 事項 四 氣象 關한 事項 五 勤業 模範 場 農林 學校 女子 蠶業 講習 所 園藝 模範 場 種 苗 場 臨時 棉花 栽培 所 及 觀測 所 關한 事項</p>	<p>第六條 農政 課에서는 左開 事務를 掌 擘 一 畜產 改良 關한 事項 二 獸疫 豫防 關한 事項 三 狩獵 關한 事項 四 輸出 牛 檢疫 所 關한 事項 五 製 乳 所 檢疫 所 關한 事項</p>	<p>第七條 畜產 課에서는 左開 事務를 掌 擘 一 畜產 改良 關한 事項 二 獸疫 豫防 關한 事項 三 狩獵 關한 事項 四 輸出 牛 檢疫 所 關한 事項 五 製 乳 所 檢疫 所 關한 事項</p>
---	--	--

檢疫法)이라는 것을 반포하였으며 검역장은 부산시 암남동으로 지정하였기에 이를 관장하는 중앙부처가 있어야 했을 것이다. 이 검역소는 후에 수역혈청제조소(獸疫血清製造所)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오늘날 수의과학 검역원의 전신이기도 하다.

1904년(광무 8년) 3월 5일 農商工部分課統程

- 第五條 農務局에 左開 三課를 掌 擘
 農政課 畜產課 開拓課
- 第六條 農政課에서는 左開 事務를 掌 擘
 一 農政 上 調査 關한 事項
 二 農業 及 蠶業의 獎勵 改良 關한 事項
 三 農業 水利 關한 事項
 四 氣象 關한 事項
 五 勤業 模範 場 農林 學校 女子 蠶業 講習 所 園藝 模範 場 種 苗 場 臨時 棉花 栽培 所 及 觀測 所 關한 事項
- 第七條 畜產課에서는 左開 事務를 掌 擘
 一 畜產 改良 關한 事項
 二 獸疫 豫防 關한 事項
 三 狩獵 關한 事項
 四 輸出 牛 檢疫 所 關한 事項
 五 製 乳 所 檢疫 所 關한 事項

이때는 한일합방을 2년 남게둔 시점에서 이미 모든 정책은 통감부에서 정하던 때이다. 조선에서는 이해 3월에 수의숙성과 20명을 선발한 것이 고작이므로 사실상 수의라는 업무가 있을 필요성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합병 후에 일본정부에서 직접 수의에 관해서 개입하겠다는 뜻인 것 같다. 당시로서는 수의는 군사상 필요한 존재였기에 한국정부에 맡겨 둔다는 것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았을 것이다.

1910년 융희 4년은 한일합방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해 3월에 다시 농상공부관계가 개정된다. 그러나 축산과라는 명칭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나 종전의 가축위생이라는 용어 대신 수역예방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또한 수출우검역이라는 새로운 조항이 신설된다. 이는 이미 1909년 7월에 수출우검역법(輸出牛

농림학교와 수의교육

1904년(광무 8년) 6월 8일에 칙령 제16호로 농상공학교(農商工學校) 관계가 반포된다. 주요내용은 농업과(農業科)와 상업과(商業科)와 공업과(工業科)를 두는데 수업 연한은 4년이며 초 1년은

範場)라는 것을 만들게 된다. 이 규정 역시 대한 제국시 1907년(광무11년) 3월 22일 칙령 제17호로 만들어져 사용되던 것을 일본정부의 칙령으로 고치게 된 것이다. 단지 농림학교만이 과거에는 독립된 기관이었으나 조선총독부에서는 권업모범장에 속하게 한 것이다.

이는 오늘날 농촌진흥청의 전신이기도 하다. 권업모범장은 산업의 발달개량을 위한 조사 및 시험과 물산의 조사 및 산업상 필요한 작물의 분석 및 감정과 종자 종묘 잠종 증금 및 종축의 배부, 산업상의 지도, 강습 및 통신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제7조에는 권업모범장에 농림학교를 부치한다고 했으며, 농림학교는 농림업에 필요한 실무를 교습하기 위함이라 했다. 그리고 직원은 교장 교수 조교수 서기 모두 10인으로 구성하였다. 교장은 권업모범장장이 겸하는 것으로 되었다.

상기 근거에 의하여 조선총독부는 1910년 12월 16일에 부령 제 61호로서 농림학교규칙중 일부를 개정하였다. 이는 위에서 설명한 대한제국 시대의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이에 의하면 연구과를 속성과로 개정하고 속성과는 '농업 임업 또는 수의에 관한 것'을 '농림업에 관한 것'으로 개정하였다. 즉 종래의 농업과 임업 수의라는 규정을 없애고 포괄적으로 농림업으로 하여 필요할 때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관장부처가 농상공대신에서 조선총독으로 변경되었다. 이로서 농림학교 규칙에 '수의(獸醫)'라는 학과가 없어지게 되었다.

교과과목은 대한제국시대의 것을 그대로 답습하였는데 단지 종전의 국어 대신 일어가 되었으며 그 외는 표현상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대동소이하였다.

완벽한 귀찮은 치료제

덱 소 립



- 1. 특징점.**
 항생제, 소염제, 살충제의 복합처방으로 세균성, 곰팡이성 외이염 치료 및 이도내의 기생충 구제 효과를 동시에 나타냅니다.
 특수 부형제 사용으로 투약 후 약물이 흘러 나오지 않으므로 목적 부위에 오래 동안 작용하여 치료 효과가 뛰어 납니다.
 탄력성이 우수한 용기를 사용하여 편리합니다.
- 2. 효능 및 효과.**
 세균성, 곰팡이성 외이염의 치료
 이도내의 기생충 제거
- 3. 사용법.**
 사용 전 본제를 잘 흔든 후 용기의 상단부를 이도내에 삽입한 후 본제 1~2 방울을 떨어뜨린 다음 잘 문질러 줍니다. 증상에 따라 1일 1~2회 완치까지 투여 합니다.